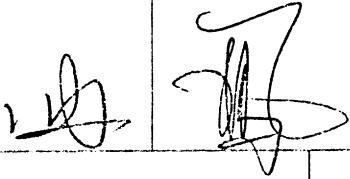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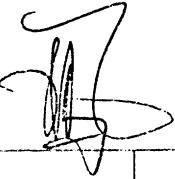


분류기호 문서번호	국무총리지시 제3 호	기 안 용 지 (전화 : 738-1382 )	시 행 상 특별취급
보존기간	영구. 준영구. 10. 5. 3. 1.	행 정 조 정 실 장	국 무 총 리
수 신 처 보존기간			
시행일자	1991. 2. 26.		
보 조 기 관	조정관  심의관  서기관 	보 조 기 관	문서통제
기안책임자	정규상		발송인
경 유 수 신 참 조	수신처 참조	발신 명의	
제 목	골재수급 및 관리개선 대책 시달		
1. "골재수급 및 관리개선 대책"을 별첨과 같이 확정 시달하니 관계부처는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.			
2. 특히 관련부처는 골재수급 및 관리개선을 위한 법제정, 제도정비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조속히 시행함으로써 향후 골재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.			
첨 부 : 골재수급 및 관리개선 대책 1부. 끝.			

1505-25-(2-1)일(1)갑  
85. 9. 9. 승 인

인쇄용지 2급

수신처 : 경제기획원, 환경처, 내무부, 재무부, 국방부, 문화부, 농림수산부

상공부, 동자부, 건설부, 교통부, 산림청, 수산청, 공업진흥청, 철도청,

해운항만청

(보고안)

수신 : 대통령비서실장

참조 : 경제수석비서관, 행정수석비서관

발신 : 행정조정실장

제목 : 골재수급 및 관리개선 대책 시달 보고

"골재수급 및 관리개선 대책"을 별첨과 같이 국무총리지시로 관련부처

에 시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.

첨부 : 시달공문 사본 1부 끝.

# 骨材需給 及 管理改善 對策

1991. 2.

國務總理行政調整室

## ( 目 次 )

### I . 骨材需給 現況 및 問題点

### II . 骨材需給 및 管理改善 對策

1. 調整의 基本方向
2. 「骨材採取에 관한 法律」(假稱) 制定
3. 其他 骨材採取 圓滑化 對策

### III . 關係部處別 措置事項

# I. 骨材需給 現況 및 問題點

## 1. 需給 現況

- 住宅 200萬戶 건설과 도로, 항만, 지하철등 사회간접자본 확대로 骨材需要 急增 豫想
  - '90년 수도권 골재수요 22.1% 증가('89 對比)
  - '91년 수도권 골재수요 14.9% 증가예상('90 對比)
- 그러나, 主供給源인 河川骨材는 그동안 집중적인 채취로 급속히 고갈되고 있음.
  - 하천골재 비중 : '82년 88% → '90년 55%(일본 '89년 5%)
- 따라서 향후 부존량이 비교적 豊富한 石山 · 海岸骨材의 원활한 개발 없이는 2~3년내에 골재파동 초래 우려

## 2. 現行 骨材需給 體制의 主要 問題點

현재의 骨材開發 體制로는 향후 골재수급에 큰 어려움  
봉착 憂慮

- 骨材需給을 總括的으로 責任지는 부서 없음.
- 全國 골재자원의 科學的 調查가 안되어 있어, 체계적인 개발 및 수급 조절 곤란
- 骨材許可 關聯法律이 多岐化되어 있고, 허가절차가 복잡하여 효율적 골재수급 阻害
- 골재채취업에 대한 管理 · 支援의 체계성 결여
- 骨材流通 및 供給秩序 紊亂

## II. 骨材需給 및 管理改善 對策

### 1. 調整의 基本方向

- 골재 採取許可와 관련하여 既存 關係法에 依據 각부처가 現在 擔當하고 있는 機能은 原則的으로 維持
- 골재수급 원활화를 위하여 需給總括部署 지정하고, 골재 수급에 관한 特別法 制定
- 基本的 사항 이외의 細部的 사항은 法令 制定 過程에서 關係部處間 協議
  - 필요시 국무총리실에서 조정

### 2. 「骨材採取에 관한 法律」(假稱) 制定

- 骨材需給 總括部署를 建設部로 指定
  - 長·短期 需給計劃의 樹立·施行등 骨材需給을 建設部長官이 總括하도록 함
  - 關係部處가 參與하는 骨材需給對策 協議會를 構成·運營하여 主要事項 協議
- 全國 骨材資源의 分布등 基礎調查를 動資部長官이, 需給計劃 樹立에 必要한 實施調查는 建設部長官이 實施
  - 基礎調查 : 地質調查, 物理探查, 시추탐사 기법등을 이용하여 골재의 부존 위치·량·심도 및 표토량, 부존구조, 개발우선순위 등 조사  
※조사지역 선정등 기초조사계획 수립은 「골재수급대책 협의회」에서 사전협의
  - 實施調查 : 연간채취량 결정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, 지역별 수송여건, 하천관리 측면등 수급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사  
※골재개발이 시급한 경우 基礎調查 없이도 건설부가 동자부의 협조를 얻어 實施調查 가능

○ 骨材採取 節次 簡素化를 위해 許可申請書 接受部署가  
一括 處理

- 骨材種類별 주관부서가 관련법에서 요구하는 제반허가 및 협의절차를 밟아서 許可하되,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부 의제처리

※ 日本의 事例(사리채취법 제16조) : 사리채취행위에 타법령에 의한行政廳의 認可 처분이 필요한 土地의 경우, 도·부·현의 사리담당부국은該當法令 담당부국과 연락·協議하여 處理하도록 함

○ 其他 法規定 事項

- 骨材採取業者의 施設·資格 基準 設定하고, 登錄制 導入  
· 등록·관리는 건설부가 담당
- 骨材採取業體 및 생산자 단체의 지도·감독, 생산장려, 세제지원방안 강구등 필요한 육성·지원의 근거 규정  
· 建設部가 담당
- 骨材不法 採取 및 低質骨材 流通등에 대한 罰則 規定
- 骨材公營 開發을 위해 必要한 경우 土地收容 등 根據 規定
- 골재 公營開發 수입금·재정자금등을 골재채취 촉진事業에 투입할 수 있는 根據 規定등

### 3. 其他 骨材採取 圓滑化 對策

- 骨材採取業에 대한 技術 및 施設投資資金 支援(動資部)
  - 石材 採取業에 대한 支援 · 育成業務와 統合 運營
    - 既存의 石材채취업에 대한 지원과 통합 · 운영토록 하여 業務의 專門性 · 效率性 提高可能(동력자원연구소 및 광업진흥공사의 전문인력 활용)
    - 向後 比重이 提高될 石山骨材의 경우, 鐵山探掘과 同一한 技術이 필요하며, 生產計劃 樹立時 技術的 側面 考慮 容易
  - \* 석재채취업에 대한 지원은 국무총리실 업무조정('88.11)에 의거 동자부가 광진공을 통하여 수행중('91에 110억원 지원계획)
  - 具體的 支援計劃은 動資部가 立案하고, 骨材需給對策 協議會의 審議 · 議決로 確定
- 骨材採取 制限을 緩和하여 計劃的 · 安定的 採取 誘導
  - 河川骨材의 採取許可期間 延長
    - 현재 1년 단위→2~3년
  - 임진강의 河川骨材 및 石山開發 허용
    - 경기도내 임진강 상류 초평도 등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골재채취 허용 적극추진
- 骨材의 不法採取에 대한 團束 強化
  - 시 · 군의 團束人力 및 檢查裝備 補強 등

○ 바다骨材에 대한 品質 檢查 強化

- 지방공업시험연구소와 시·군의 合同點檢 實施
- KS지정 받은 레미콘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
※레미콘 업체의 KS 지정율 : 75%

○ 其他 必要措置

- 骨材採取 許可料의 合理的 調整등

## IV. 關係部處別 措置事項

措 置 事 項	主管部處 (關聯部處)	時 限
1) 法律 制定 - 法案作成 및 立法豫告, 關係部處協議等	건설부	'91. 9월
2) 全國骨材資源 基礎調查 計劃 樹立	동자부	'91. 5월
3) 河川骨材 採取許可 期間 延長 - 지침시달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	건설부	'91. 3월~
4) 임진강 유역 軍事施設 保護區域 골재 채취 허용	건설부 (국방부)	'91. 4월
5) 不法採取 團束 強化 - 단속인력 및 검사장비 보강	내무부 (지자체)	'91. 상
6) 바다골재에 대한 品質檢查 強化 - 합동점검 실시 - KS지정 레미콘 업체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	건설부 내무부 (지자체) 공진청	'91. 3월~
7) 其他 必要措置	건설부	'91. 3월~